신체손해사정사 2차 시험대비

자동차보험의 이론과 실무

자보약술집

#기출문제 및 예상문제

김영길 지음

(주)공제작소

머리말

자동차보험 과목은 면부책(보험금계산 포함)과 약술이라는 두 개의 큰 축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두 개의 축을 균형있게 공부하여야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가에서 이루어지는 강의는 면부책(보험금계산 포함) 분야에 치중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수험생들이 약술문제를 어떻게 대비하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에 대한 막막함과 막연한 두려움 속에 수험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약술문제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약술을 보다 체계적, 안정적으로 대비하고자 '약술기출 및 예상문제 모범답안집'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본 서의 집필방향

1. 연도별(2005년~2023년) 기출문제의 배점비중 및 추이를 분석하고 출제경향을 분석해 봄으로써 학습방향과 학습방법, 학습범위 등을 설정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기출문제(2005년~2023년) 및 예상문제 모범답안을 제시함으로써 문제 유형별 답안 작성요령을 학습해보고 출제예상 문제를 가늠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의 특징

제46회 시험(2023년)에 출제된 기출문제를 추가하였고 오타 및 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최근 4년간의 출제 경향을 보면 약술문제의 출제비중이 100%입니다. 그만큼 약술 공부의 비중과 중요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그러나 본 서를 토대로 필자가 제시하는 공부방법론과 답안작성 방법(목차 구성방법)을 숙지하시면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약술은 출제범위(공부범위)가 광범위한데다가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기보다는 시험 후반부에 찍어서 몰아치기식으로 공부를 하다보니 스트레스 지수만 올라가고 막상 실전에서는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약술공부도 알고보면 비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본서를 多讀하는 것입니다. 기본교재를 多讀함으로써 교재 이해도를 높여 놓으면 약술의 80% 정도는 자동으로 해결됩니다. 필자를 믿고 기본서 多讀에 승부를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면부책(보험금계산)도 해결하고 약술도 해결하는 1석2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약술문제의 답안 목차를 어떻게 구성해야하는지 몰라서 걱정하는 수험생들이 많습니다. 약술문제는 면부책 문제와 달리 정형화된 목차 포맷이 없습니다. 문제에 따라 해당 문제에 적합한 목차를 구성해서 답안을 작성하면 되는데, 약술은 거의 대부분 문제의 제목 안에 목차가 있습니다. 본 서에 소개한 모범답안을 통해 문제 유형별 답안작성 요령 및 목차구성 요령을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필자는 그동안 수험생들의 약술공부의 해법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해왔고, 교재와 강의, 그리고 실전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왔다고 자부합니다. 모쪼록 본 서를 통해 보다 쉽고 빠른 약술 정복의 해법(기본서 多讀 후 본 서를 가지고 총정리)과 합격으로 가는 지름길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8월
저자 깨롱이 씀

✜ 기출문제 배점비중 및 추이(2005년~2023년)

자동차보험의 배점 비중 및 추이를 잘 알고 시험에 대비하세요.~

연도	사례형 문제 (=면부책+보험금계산)	약술형 문제
2023	0	25, 25, 20, 10, 10, 10
2022	0	20(15, 5), 20(10, 10), 15, 15, 10, 10, 10
2021	0	30(10, 10, 10), 20, 20, 15, 15
2020	0	15, 25, 15, 15, 15, 15
2019	50(30, 20)	50(20, 15, 15)
2018	45(30, 15)	55(15, 15, 15, 10)
2017	50(30, 20)	50(20, 15, 15)
2016	45(30, 15)	55(20, 20, 15)
2015	70(40, 20, 10)	30(20, 10)
2014	40(보험금계산 문제 첫 출제)	60(20, 10, 10, 10, 10)
2013	35	45(15, 10, 10, 10)
2012	30	50(20, 20, 10)
2011	30	50(15, 15, 10, 10)
2010	40	40(20, 10, 10)
2009	40	40(20, 10, 10)
2008	40	40(15, 15, 10)
2007	40	40(20, 10, 10)
2006	40	40(20, 10, 10)
2005	30	50(20, 20, 10)
공부방법	기본교재 정독 및 강의를 바탕으로 기본기(면부책 및 보험금계산)를 1차시험 종료시점까지 무조건 마스터해 두어야 한다.	1차시험 종료시점까지는 기본교재를 반복 정독하고 1차시험 이후부터 본 서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준비하면 된다.

※ 종별손해사정사 제도가 2014년 신체손해사정사 제도로 개편되면서 사례형 문제에 면부책 뿐만 아니라 보험금계산이 출제되기 시작하였다.

❖ 출제경향 분석(2005년~2023년)

(1) 약술형 문제의 배상책임론 쟁점

주요쟁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민법, 자배법 비교																○			
운행자 / 운전자							○												
다른사람 (타인)																			○
절취운전																			
대리운전																		○	
합의후 추가 보상요건								○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기왕증			○											○					
손익상계 개념·유형								○											
중간이자 공제방식																			
한시장해							○												
강력한과실 / 약한 의미의 부주의									○										
운전자의 법률상지위													○						
자배법상 피해자보호제도														○					
피해자측과실																			
상속																		○	
과실상계의 법리																			○

(2) 약술형 문제의 보상책임론 및 보상범위론 쟁점

주요쟁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유상운송																○			
사고부담금																	○	○	
자손과 자상의 차이점																			
무보험자동차 상해					○														○
피보험자 개별적용						○											○		
피보험자 개념, 범위							○	○	○					○				○	
합의절충 소송대행						○													
보험금청구권								○											
계약변경에 따른 보험기간 변동	○																		
양도·대체						○				○						○			
대인배상 위자료기준				○													○		
가정간호비. 개호비												○						○	
상실수익액 산정			○															○	
현실소득 산정방법										○						○			
노동능력상실 기간. 상실율												○							
취업가능월수																○			
운전자 특약				○															
타차특약					○							○							○
약관개정사항									○				○			○			
약관상피해자보호제도														○					

주요쟁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담보별 공제액			○																
과실적용 수정요소					○										○				
과실상계 조항																			○
과실도표상의신뢰의 원칙							○												
과실상계 우선 적용 사고											○								
가지급금 우선지급금 가불금					○														
외국인취업 가능월수									○										
기왕증이 있는 경우 담보별 보험금산정방법	○																		
대인배상장해평가방법							○		○						○				
대인배상 Ⅰ·Ⅱ 비교										○									
대인배상 Ⅰ 사망.부상.장해보험금 산정 (한도액, 상해.장해급수)										○		○							
운전자의 약관상지위							○						○						
피해자직접 청구권							○							○	△	○			
보험금 계산문제											○					○			
위법계약의 해지																		○	
12-14급 과실상계																			○

(3) 약술형 문제의 기타 쟁점

주요쟁점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진료수가제도			○																
정부보장사업	○																○		
구상. 보험자대위		○					○										○		
보험범죄의 특징·유형		○																	
자배법 (입원환자 관리제도)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손해사정사 조사사항, 조사요령, 조치사항							○				○				○				○

가이드

PART 01 기출문제(80문제)

- 2005년(28회) 기출문제 ····· 2
- 2006년(29회) 기출문제 ····· 7
- 2007년(30회) 기출문제 ····· 12
- 2008년(31회) 기출문제 ····· 17
- 2009년(32회) 기출문제 ····· 23
- 2010년(33회) 기출문제 ····· 27
- 2011년(34회) 기출문제 ····· 31
- 2012년(35회) 기출문제 ····· 38
- 2013년(36회) 기출문제 ····· 43
- 2014년(37회) 기출문제 ····· 48
- 2015년(38회) 기출문제 ····· 55
- 2016년(39회) 기출문제 ····· 63
- 2017년(40회) 기출문제 ····· 70
- 2018년(41회) 기출문제 ····· 75
- 2019년(42회) 기출문제 ····· 83
- 2020년(43회) 기출문제 ····· 91
- 2021년(44회) 기출문제 ····· 104
- 2022년(45회) 기출문제 ····· 117
- 2023년(46회) 기출문제 ····· 129

PART 02 예상문제(77문제)

1. 배상책임 영역 ····· 142
2. 보상책임 영역 ····· 168
3. 보험금 계산 영역 ····· 196
4. 기타 ····· 214

PART 01

기출문제(80문제)

1. 출제 이후 약관, 법령이 개정된 문제는 현행 약관, 법령을 기준으로 풀이하였습니다. 다만 현행 기준으로 풀이하기 곤란한 문제는 현행 약관, 법령을 언급하여 두었습니다.
2. 기출문제는 반드시 또 다시 출제됩니다. 절대 소홀히 하면 안됩니다.

2005년(28회) 기출문제

문제 2 15점

부상자에게 기왕증 등의 소인이 있는 경우 지급보험금의 범위 등에 대하여 담보종목별(대인배상 및 자기신체사고)로 살펴보시오.

1. 기왕증의 의의

기왕증이라 함은 당해 자동차사고가 있기 전에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으로 특이체질 및 병적 소인 등을 포함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기왕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2. 약관규정

기왕증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당해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기왕증이 악화된 경우에는 기왕증이 손해에 관여한 정도(기왕증 관여도)를 반영하여 보상한다.

기왕증은 해당과목 전문의가 판정한 비율에 따라 공제한다. 다만, 그 판정에 다툼이 있을 경우 보험금 청구권자와 보험회사가 협의하여 정한 제3의 전문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판정을 의뢰할 수 있다.

3. 판례의 입장

기왕증이 당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됨으로써 피해자에게 특정 상해의 발현 또는 치료기간의 장기화, 나아가 치료종결 후 후유장애 정도의 확대라는 결과 발생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기왕치료비, 휴업손해, 노동능력상실율(일실수익), 향후치료비, 개호비 등 전손해에 걸쳐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0.3.25. 선고 2009다95714 판결 외 다수).

상해보험은 계약체결 전에 이미 존재한 신체장해 또는 질병의 영향에 따라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영향이 없었을 때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관이 따로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체질 또는 소인 등이 보험사고로 인한 후유장해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보험금의 지급을 감액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07.4.13. 선고 2006다49703 판결 외 다수).

4. 담보별 지급보험금의 범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에 대한 보험금 산출 시, 기왕증 기여도를 참작하여 보상한다. 다만, 사고로 인하여 추가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상한다.

문제 3

15점

자동차보험계약의 소멸, 승계,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보험기간의 변동

1. 보험계약의 소멸

가. 보험계약의 취소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사기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한 점을 증명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6개월 이내(사기 사실을 안 날부터는 1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보험계약의 효력상실

보험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해지함이 없이 3월이 경과하는 경우 보험계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다. 보험계약의 해지·해제

보험계약자는 임의보험은 언제든지 보험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의무보험은 약관에서 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이 의무보험만 체결된 경우로서, 이 보험계약을 맺기 전에 피보험자동차에 대하여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보험계약(공제계약을 포함)이 유효하게 맺어져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다른 보험계약이 종료하기 전에 이 보험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는 기명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약관에 정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의 승계

가. 보험계약의 양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는 이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는 피보험자동차의 양수

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이 권리와 의무를 양수인에게 이전하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 대하여 이 보험계약을 적용한다.

나. 보험계약의 교체(대체)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한 다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의 다른 자동차로 교체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가 이 보험계약을 교체된 자동차에 승계시키고자 한다는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때부터 이 보험계약이 교체된 자동차에 적용된다. 이 경우 기존의 피보험자동차에 대한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에 상실된다.

3.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보험계약의 배서)

보험계약자는 의무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회사의 승낙을 얻어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및 그 밖의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4. 보험계약의 소멸, 승계, 계약내용의 변경에 따른 보험기간의 변동

보험계약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보험기간도 소멸하게 된다. 다만, 취소, 해제의 경우에는 계약 당시로 소급하여 소멸하지만 효력상실 및 해지의 경우에는 해지 이후 장래에 향하여 계약이 소멸된다.

보험계약의 양도 및 교체의 경우 보험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보험자에게 통보하지 않거나 승인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자는 면책이 되므로 보험기간도 소멸한 셈이 된다.

보험계약 내용의 변경(배서)의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가입금액, 특별약관 및 그 밖의 계약의 내용의 변경 유·무의 문제이므로 이러한 계약 내용의 변경 승인 여부를 불문하고 보험기간의 변동은 없다.

※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양도 승인신청 제도 및 승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약관 내용대로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4

15점

정부보장사업

1. 정부보장사업의 개념

뺑소니 자동차 또는 무보험(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로 다른 수단으로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인신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 및 중증후유장해인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을 목적으로 정부(국토부 주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의 일종이다.

2. 정부보장사업의 내용

가. 뺑소니 및 무보험자동차 피해자에 대한 구제(자배법 제30조 제1항)

(1) 적용대상(보상대상)

① 자동차 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 : 뺑소니(가해자불명) 자동차에 의해 죽거나 다친 피해자

②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의 자동차 사고(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가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을 지는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 : 책임보험 미가입 자동차 사고 피해자, 책임보험 면책되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무단운전·도난운전 자동차 사고 피해자, 양도일로부터 15일이 경과된 자동차 사고 피해자로서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하는 자 → 가해자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로서 자배법상 운행자, 피해자는 자배법상 타인에 해당되어야 한다[1].

(2) 보상한도 및 보상범위

책임보험 한도액 범위내에서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보상한도액 및 지급기준은 책임보험과 동일하다). 따라서 사망은 1.5억원, 부상 및 장해는 책임보험 각 급별 한도액 범위내에서 책임보험 지급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지급한다(자배법 적용, 보상한도액 및 지급기준이 책임보험과 동일하다).

---

1) 예컨대, A 소유 자동차(자동차보험 미가입)를 B가 빌려 운전중 A가 다친 경우(A는 탑승 또는 보행 중), B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로서 자배법상 운행자에 해당하지만 피해자인 A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므로 정부보장사업 보상 대상이 될 수 없다.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 가입되어 있다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보험회사가 A에 대해 책임보험(대인배상Ⅰ)이 면책되므로(A는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된다) B는 보험가입자 등이 아닌 자에 해당하지만 A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장사업도 면책된다. 2012년(제35회) 출제된 사례 문제에서 E에 대한 보장사업 면책 이유도 E가 자배법상 타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 정부가 운영하는 책임보험이라고 이해하면 쉽다.

(3) 적용제외

1) 자배법상 보험가입이 강제되지 않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2) 국가배상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배상 또는 보상을 받는 경우 3)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보유자 및 가해자로부터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4) **개인형이동장치에 의한 사고 피해자는 적용제외 된다.**

(4) 기타

보장사업의 사회보장적 기능을 감안하여 압류 및 양도를 금지하고 있고 정부는 피해자의 손해를 보상한 뒤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고 그 소멸시효는 3년이다.

나. 자동차사고 유가족 지원제도(자배법 제30조 제2항)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후유장해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생계곤란, 학업중단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중증 장해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행한다.

중증후유장애인의 경우 의료기관 또는 재활시설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요양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고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한다.

유자녀의 경우 생활자금의 대출, 학업의 유지를 위한 장학금의 지급, 자립지원금 등을 지급한다. 피부양가족의 경우 노부모 등의 생활의 정도를 고려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상기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심리치료 등의 정서적 지원사업을 한다. 지원받을 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같은 사유로 지원을 받으면 그 지원을 받는 범위에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006년(29회) 기출문제

문제 2 20점

자동차보험에서 발생하는 구상권의 유형 및 피구상자(보험회사 제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구상권의 유형

1) 공불사고에서 대인배상Ⅰ·Ⅱ 보상 후 상대 보험사, 지자체, 병원 등에 대한 구상

쌍방과실 사고에서 일방의 보험자가 제3의 피해자에 대하여 선보상후(공동면책 후) 타방의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한 손해에 대하여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공작물설치하자 및 보존상의 과실이 있는 지자체에 대한 구상, 의료과실에 따른 의사 내지 병원을 상대로 구상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2)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가해자에 대한 구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 후 피보험자가 가해자에 대해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무보험자동차상해에서 책임보험사에 대한 구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서 대인배상Ⅰ 부분까지 포함하여 선보상 후 책임보험사에 대인배상Ⅰ 해당액을 구상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무보험자동차상해 중복계약에서 다른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사에 대한 구상

무보험자동차상해를 중복해서 가입한 피보험자에 대하여 선보상 후 타방 무보험자동차상해 가입사에 대하여 분담금을 상환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무단, 절취운전사고 등에서 제3자를 상대로 한 구상

무단운전, 절취운전 사고에서 면책약관 개별적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상 후 약관상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무단, 절취운전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 제3자라고 하더라도 판례와 상법상 가족에 대한 구상은 허용되지 않는다. 단, 상법은 고의사고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6) 면책약관 개별적용 후 면책되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한 구상

면책약관을 피보험자별로 개별적용 후 부책되는 피보험자를 통해 보상 후 면책되는 피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판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한 면책된다는 사유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고 있고 현행 약관은 고의사고에 한해 구상을 허용하고 있다.

7) 대인배상Ⅰ 고의사고 피보험자에 대한 구상

대인배상Ⅰ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고를 낸 경우에 피해자가 직접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 후 피보험자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때 피보험자를 상대로 행사하는 상환청구권을 말한다.

8)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사고후미조치 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한 구상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 사고후미조치 운전 시 피보험자가 납부해야 하는 사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시 피보험자를 상대로 사고부담금을 상환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 2018.5월부터 사고후미조치, 2022.7월부터 마약·약물 운전 사고부담금이 추가되었다.

9) 타차특약에서 책임보험사에 대한 구상

타차특약에서 대인배상Ⅰ부분까지 포함하여 선보상 후 책임보험사에 대인배상Ⅰ 해당액을 상환청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10) 정부보장사업금 보상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한 구상

정부보장사업금 보상 후 가해자를 상대로 한 상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피구상자(보험회사 제외) 소유의 재산에 대한 채권보전조치

1) 채권보전조치의 의의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미리 피구상자(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그 처분을 빼앗아두는 것으로서 가압류를 의미한다.

2) 가압류의 필요성

채무자가 임의변제 촉구에 불응하는 경우나 채권자가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은 무용지물이 되므로 채무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금지시켜두어야 안정적으로 채권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3) 가압류의 목적물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 / 보험금 청구채권 / 판결금 청구채권 / 급여채권 등), 자동차 등과 같이 금전적 가치가 있는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다.

4) 압류금지물

채무자가 그 동거가족을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의복, 침구, 가구, 부엌가구, 기타 생활필수품등과 압류가 금지되는 법령상 부양료, 유족부조료 등이 있다.

5) 가압류의 신청

가압류는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을 하며, 유체동산은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부동산은 목적물 소재지 지방법원, 채권은 배상의무자 주소지 지방법원에 신청한다.

6) 가압류의 효과

가압류 목적물에 대하여 채무자가 매각, 증여 또는 저당권, 질권 등 담보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효력과 시효중단의 효력, 배당요구의 효력이 있다.

문제 3

10점

개인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상 사상자에 대한 지급보험금 산정 시 공제되는 금액(공제액)에 대하여 담보종목별(대인배상 Ⅰ·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로 기술하시오.

1. 대인배상 Ⅰ

대인배상 Ⅰ은 공제액 항목이 없다. 다만, 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손해배상금)은 손익상계 대상이다.

2. 대인배상 Ⅱ

1)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되는 금액 또는 피보험자동차가 대인배상 Ⅰ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인배상 Ⅰ에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로부터 받은 금액(손해배상금)은 손익상계 대상이다

3. 자기신체사고

1) 자동차보험(공제계약 포함) 대인배상 Ⅰ(정부보장사업 포함) 및 대인배상Ⅱ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 이외의 제3자로부터 보상받은 금액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따라서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무보험자동차상해

1) 대인배상 I (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2)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3)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II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4)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5)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문제 4

10점

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의 특징 및 주요 유형에 관하여 쓰시오.

1. 최근 매스컴에서 자주 보도되는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의 특징

최근 자동차보험 관련 범죄는 날로 새로워지고 다양해지고 있는데 그 특징들은 다음과 같다.

1) 범죄 내용이 날로 과감해지고 있다.
2) 신종수법들이 등장하고 있다.
3) 연령층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4) 범죄수법의 은밀성과 상습성, 반복성을 띤다.
5) 범죄수법의 학습현상으로 인하여 전문성을 띤다.
6)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 지능화하는 경향이 있다.
7) 보험사고를 위장하거나 범인 자신을 범행혐의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8) 다른 범죄의 결과로서 보험사기를 이용하기도 하지만 보험금을 편취하기 위해 살인, 방화와 같은 타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복합적인 성격을 띤다.
9) 외견상 보험회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것으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해 전체 보험계약자에게 피해가 전가된다.
10)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범죄의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기를 저지르고도 사회적으로 잘못된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돌리는 도덕적 불감증을 보여준다.

2. 주요유형

1) 고의적인 초과 또는 중복보험체결, 고지의무위반

2) 고의사고 유발(자해), 교통사고 가장, 미발생 사고 가공, 피해자 끼워넣기

3) 면책손해 전환 – After loss, 허위진술 또는 허위자료 제시(운전자 바꿔치기 등)

4) 가·피해자간 공모에 의한 사고 유발

5) 허위입원, 불필요한 장기입원, 허위진단서·견적서 발급

6) 자동차 보험사기 대표 유형

① 음주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② 불법유턴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③ 역주행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④ 중앙선 침범차량 대상 보험사기
⑤ 횡단보도 사고를 위장하는 보험사기
⑥ 사고 후 처리가 미흡한 운전자 대상 보험사기
⑦ 차선변경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⑧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대상 보험사기
⑨ 좁은 골목길 진행차량 대상 보험사기
⑩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한 보험사기

2007년(30회) 기출문제

문제 2 20점

현행 자동차보험 제도상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및 기왕증의 보상처리 등을 비교·설명

1. 과실상계

1) 의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방지, 손해의 회피, 경감 등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여 가해자의 배상액을 경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근거

공평 내지 신의칙의 견지에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자기의 과실에 의한 손해를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형평의 정신에 반한다는 취지이다.

3) 적용담보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적용한다.

2. 손익상계

1) 의의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당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피해자에게 생긴 이익이 있으면 그 이익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인정근거

손해배상은 피해자의 실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피해자로 하여금 이중이득을 취하게 하는 것은 손해배상의 본질에 반하므로 이중이득의 방지를 위해 인정되는 제도이다.

3) 적용담보

대인배상Ⅰ·Ⅱ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적용한다.

3. 동승자감액

1) 의의

자동차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자동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100%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므로 피해자(동승자)의 손해배상액에서 일정한 비율을 감하게 되는데, 이를 호의동승감액 또는 동승자감액이라고 한다.

자동차 탑승자에 대하여 과실상계(동승자 과실)의 방법이 아닌 호의동승 사실만으로 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기 때문에 동승자에게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게 된다.

2) 인정근거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무상으로 동승한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을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는 공평의 관념에서 인정된다. 법에 규정된 바는 없고 판례에서 인정하는 제도이다.

3) 적용담보

대인배상 Ⅰ·Ⅱ와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적용한다.

4. 기왕증

1) 의의

기왕증은 피해자가 이미 종전부터 갖고 있던 기왕의 장해, 퇴행성 병변, 선천성 질환 등이 사고와 경합하여 당해 사고로 인한 부상, 장해, 사망 발현 내지 악화에 기여한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기왕증은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2)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근거

기왕증은 교통사고와 무관한 것으로서 사고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이라도 당해 사고로 인해 추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적용담보

대인배상 Ⅰ·Ⅱ와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에 적용한다.

5.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 감액 및 기왕증의 비교

1) 유사점

과실상계, 손익상계, 동승자감액 및 기왕증의 유사점은 피해자의 손해액을 산출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사정에 따라 손해액을 감액해야 할 사정이 있으면 그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는 공평의 관념이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2) 차이점

과실상계는 피해자의 부주의(과실)에 기초하고 동승자감액은 피해자의 부주의(과실)과는 무관하고 피해자가 운행이익을 공유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손익상계는 이중이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정되며 기왕증 공제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부분은 손해배상의 영역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있다.

과실상계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동승자감액은 판례에서 인정되는 이론이며, 손익상계와 기왕증공제는 손해배상 및 보험자의 보상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당연 적용사항이다.

3) 적용순서

적용순서는 기왕증공제 → 과실상계 및 동승자감액 → 손익상계 순으로 한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지금은 손익상계를 먼저한 후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

문제 3

10점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가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상실수익액 산정방법을 쓰고 그 보험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불법체류중인 외국인 근로자의 사망 상실수익액 산정방법

1) 상실수익액

유직자 중 소득입증이 가능한 자는 내국인의 현실소득액 산정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자는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2].

2) 취업가능월수

사고일로부터 3년간은 국내의 소득기준을, 그 후부터는 본국의 소득기준을 적용한다[3].

2) 참고로, 무직자, 학생, 미성년자 등은 일용근로자 임금을 적용한다.

3) 2013년 약관개정시 '외국인취업가능월수' 를 신설하면서 불법체류자의 취업가능월수를 이와 같이 명시하였다.

참고

소송이 제기된 경우

허가된 체류기간이 도과되어 불법체류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상당 기간 국내에 체류하기도 하므로 상당한 기간(소송실무상 3년 안팎으로 인정하고 있다)은 국내에서 실제 얻고 있던 임금액을 기초로, 그 나머지 기간은 본국에서의 수입을 기준으로 하여 본국에서의 가동연한까지 인정하는 것이 소송실무례이다.

2. 보험금 지급 시 유의사항

1) 합의권자(상속권자) 신분확인

불법체류 외국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불법체류라는 점과 외국인이라는 특성에 비추어 정당한 합의권자에 대한 확인이 보다 심도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민법상의 합의권자와 망인 소속 국가의 합의권자의 범위가 다를 수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본국 기준으로 합의권자를 선정하되 국내 민법상의 합의권자도 합의에 참여시킴으로써 분쟁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2) 제출된 자료의 판독 철저

외국인의 특성상 제출된 자료가 국내 문서가 아닌 외국 문서가 많을 것이므로 당해 문서의 내용 파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3) 제출된 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제출된 서류의 위·변조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문서의 진위 여부를 가려야 한다.

4) 대리권 수여 여부 및 대리인의 신분 철저 확인

대리권이 정당한 합의권자에 의해 수여되었는지, 위·변조는 없는지, 대리인의 신분에 이상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다.

5) 국내에서 확인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대사관에 연락하여 확인하도록 한다.

문제 4

10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제도에 관한 보험사업자 등의 심사청구 절차를 중심으로 설명하시오.

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제도의 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제도의 하나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제도를 도입하여 보험회사의 진료비 지급보증,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적용, 진료수가의 청구 및 지급, 피해자에 대한 청구 금지, 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의 위탁, 자동차보험진료수가 분쟁심의회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 보험회사의 진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보증

보험회사(공제 포함)는 보험가입자 또는 피해자가 청구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교통사고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해당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 한도를 알려야 한다.

3.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와 지급 한도를 통지받은 의료기관은 그 보험회사에게 국토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4. 보험회사의 진료비(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료기관이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의 진료기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하고 의료기관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하면 보험회사는 30일 이내에 그 청구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심사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피해자에 대한 청구 금지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에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환자(환자의 보호자 포함)에게 이에 해당하는 진료비를 청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자배법 제12조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6. 업무의 위탁

보험회사는 제12조 제4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청구하는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조정 업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심평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제15조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한다.

2008년(31회) 기출문제

문제 2 15점

자동차보험에서 운전자를 한정하는 특약에 가입된 피보험차량을 그 한정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를 설명하시오.

1. 운전자한정특약의 의의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자의 범위를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로 범위를 제한하거나 일정한 연령 이상자로 연령을 제한함으로써 보험자로서는 사고발생 위험율을 낮추어 손해율 개선에 기여하고 계약자로서는 효율적인 보험가입(보험설계)을 통해 보험료를 할인받는 제도이다.

2. 운전자한정특약의 종류

1) 운전자범위제한특별약관

가족한정운전특별약관, 부부한정운전특별약관, 기명1인한정운전특별약관 등등이 있다.

2) 운전자연령제한특별약관

만21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만30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만48세이상한정운전특별약관 등등이 있다.

3. 운전자한정특약 위배 시 효과

당해 특별약관에서 정한 운전 가능자 이외의 자가 운전중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전 담보에 걸쳐 보험자는 책임을 면한다.

4. 한정된 운전자 이외의 자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하여도 보험회사가 보상책임을 지는 경우

1)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는 도난 및 무단운전 중 사고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특약위배 운전의 경우에는 비록 동 특약에 위배하여 운전하였다 하더라도 기명피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보험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면책약관 개별적용).

특약에 위배하여 운전한 경우에는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전담보 면책이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이 없는 도난 및 무단운전 중 발생한 특약위배 운전의 경우에는 보상책임이 발생한다. 면책예외 담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이다.

2) 자동차취급업자가 업무상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 발생한 사고

기명(또는 승낙)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하의 특약위배 운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취급업자(관련법규에 의해 사업자등록을 한 자동차취급업자에 한한다)가 업무상 위탁받은 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에는 기명(또는 승낙)피보험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면책할 수 없다. 운전 주체가 자동차취급업자라는 사실 그 자체를 이유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것이다. 즉, 기명(또는 승낙)피보험자가 특약위배 운전을 명시적·묵시적으로 승인하였으므로 원래는 기명(또는 승낙)피보험자도 면책이지만 제도적, 정책적 차원에서 기명(또는 승낙)피보험자는 특별히 부책 해준다. 면책예외 담보는 대인배상Ⅱ이다.

※ 본 항은 2015년 12월에 신설된 항목이다.

3) 보험자의 설명의무 위반

보험자가 특별약관의 내용을 알려주지 않은 경우에는 면책을 주장할 수 없다.

운전자 연령제한특별약관과 달리 운전자범위제한특별약관에는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보험실무 및 소송실무상 동 특약도 설명의무 대상으로 파악하고 있다. 면책 예외 담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이다.

4) 운전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경우

특약위배라 하더라도 운전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면 면책적용이 불가하다. 따라서 특약위배 운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행 중 (불법)주차시킨 채 식당에 들어가 음식을 주문하고 있던 사이에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동 면책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예외 담보는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이다.

문제 3

15점

2007년 5월 17일자로 일부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신설된 입원환자 관리제도(동법 제13조 및 시행령 제12조 관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관리

1) 보험회사 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①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의 이름, 생년월일 및 주소

② 외출 또는 외박의 사유

③ 의료기관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기간, 외출·외박 및 귀원(歸院) 일시

2)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에는 외출 또는 외박을 하는 자나 그 보호자,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한 의료인 및 귀원(歸院)을 확인한 의료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인이 외출 또는 외박을 허락하거나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할 수 있다.

3)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 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마이크로필름 또는 광디스크 등에 원본대로 수록·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필름의 표지에 필름촬영 책임자가 촬영 일시 및 그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외출 또는 외박에 관한 기록의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 자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2. 입원환자의 퇴원·전원 관리

1) 의료기관은 입원 중인 교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환자에게 퇴원하도록 지시할 수 있고,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해당 환자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를 통지한 해당 보험회사 등에게 그 사유와 일자를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생활근거지에서 진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입원 중인 교

통사고환자가 수술·처치 등의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의료기관 또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판단 결과 상태가 호전되어 더 이상 진료 중인 의료기관에서의 입원진료가 필요하지 않아 생활근거지에 소재한 의료기관 또는 제2항에 따른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길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환자에게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하도록 지시한 의료기관이 다른 의료기관이나 담당의사로부터 진료기록, 임상소견서 및 치료경위서의 열람이나 송부 등 진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자배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2

3.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관리 및 입원환자의 퇴원·전원 관리제도 운영취지

한국의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은 이웃나라 일본의 입원율에 비해 7~8배 이상 높고, 입원환자 중 부재환자(가짜환자) 비율도 17%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처럼 교통사고 환자의 입원율이 높은 이유는 높은 보상금을 받기 위해 불필요한 입원을 원하는 환자와 경영상의 문제로 이를 수용하거나 방치하는 병·의원들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이고 근본적으로는 이들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교통사고로 인한 "가짜환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진료 등으로 인한 보험료 과다 지출 방지하기 위해 입원환자의 외출 또는 외박 관리 및 입원환자의 퇴원·전원 관리제도를 도입, 운영하게 되었다.

교통사고 환자의 병원진료비는 입원료와 식대가 차지하는 구성비가 매우 높아 제도운영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병원진료비도 큰 폭으로 감소된다.

결과적으로 가짜 환자(나이롱 환자)와 입원기간이 줄어든다면 입원치료가 긴급한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자원의 효용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더 많은 국민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도 경감될 것이다.

문제 4

15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대인배상 위자료 지급기준

1. 사망위자료

(1) 지급기준

사망 당시 연령이 만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사망 당시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2) 청구권자의 범위 및 청구권자별 지급기준

민법상 상속 규정에 따른다. 따라서 민법의 상속순위 및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2. 장해위자료

(1) 지급기준

1)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①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45,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4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② 피해자가 가정간호비 지급대상인 경우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미만인 경우	8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후유장해 판정당시 피해자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인 경우	50,000,000원 × 노동능력상실률 × 85%

㉠ 후유장해 판정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최초 후유장해 판정 시점의 피해자 연령을 기준으로 후유장해 위자료를 산정한다.

2)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금액	노동능력상실율	인정금액
50% 미만~45% 이상	400만원	20% 미만~14% 이상	120만원
45% 미만~35% 이상	240만원	14% 미만~9% 이상	100만원
35% 미만~27% 이상	200만원	9% 미만~5% 이상	80만원
27% 미만~20% 이상	160만원	0 초과~5% 미만	50만원

(2) 청구권자 : 피해자 본인

(3) 부상위자료가 더 많을 때

"부상위자료액을 장해위자료로 지급한다." 예컨대, 부상1급 피해자가 노동능력상실율 20%의 장해를 입은 경우 160만원이 아닌 부상1급 위자료 200만원을 장해 위자료로 지급한다. 장해위자료가 더 많을 때는 장해위자료를 지급한다.

3. 부상위자료

(1) 지급기준

책임보험 상해구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급별로 인정한다.

급별	인정액	급별	인정액
1급	200만원	8급	30만원
2급	176만원	9급	25만원
3급	152만원	10급	20만원
4급	128만원	11급	20만원
5급	75만원	12급	15만원
6급	50만원	13급	15만원
7급	40만원	14급	15만원

(2) 청구권자

피해자 본인

(3) 과실상계 후 후유장해 상실수익액과 가정간호비가 후유장해 보험금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상보험금 한도내에서 부상위자료를 지급한다.

※ 위 답안은 현행 약관 기준이며 2008년 출제 당시 약관의 위자료 지급기준은 상기(현재)와 달랐음.

2009년(32회) 기출문제

문제 2 20점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및 다른 자동차운전담보 특별약관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대하여 쓰고 각각의 지급보험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개인용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피보험자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모 및 자녀
④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승낙피보험자(단, 취급업자 제외)
⑤ 이상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단, 취급업자 제외)

2. 개인용자동차보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의 지급보험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식 :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해 산출한 금액 + 비용 − 공제액

1) '지급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한다.

2) '비용'은 ①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긴급조치비용을 포함)과 ② 다른 사람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이 비용은 보험가입금액과 관계없이 보상한다.

3) '공제액'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

① 「대인배상Ⅰ」(책임공제 및 정부보장사업을 포함)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② 배상의무자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③ 피보험자가 탑승 중이었던 자동차가 가입한 「대인배상Ⅱ」 또는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④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⑤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할 금액으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

※ 위 답안은 현행 약관 기준이며 2009년 출제 당시 약관은 상기(현재)와 달랐음.

3.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피보험자

① 기명피보험자

②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다만, 별도의 특별약관에 의해 배우자가 운전가능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예컨대,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운전 특별약관)에는 배우자는 피보험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기신체사고 피보험자로 간주된다.

4. 다른 자동차운전담보특별약관의 지급보험금 산정

지급보험금 산식 : 이 특약에 의해 산출된 금액 – 다른 자동차의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될 수 있는 금액 → 초과손해전보조항의 성격을 띤다

문제 3

10점

자동차와 자전거의 교통사고 발생 시 자동차 보험약관의 과실비율 적용기준상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적용 수정요소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의 의의

지급기준의 과실비율 책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업계에서 공통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표는 자동차보험의 보상 및 구상의 실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제정된 기준이다. 동 기준에 사고유형이 없는 경우에는 판결례를 참작한다.

2. 과실상계를 위한 과실비율 수정방법

① 먼저 구체적 사고에 맞는 유형을 찾는다. 이때 해당되는 수정요소가 있을 경우 해당 차량에는 가산 내지 감산을, 상대차량에는 반대로 감산 내지 가산한다. 단, 현저한 과실과 중과실이 경합할 경우는 중과실의 수정요소만을 적용한다. 만일 도표에서 현저한 과실·중과실이 같이 표시된 경우 앞의 값은 현저한 과실비율을 나타내고 뒤의 값은 중과실비율을 나타낸다(예 현저한 과실·중과실이 +10~20인 경우 현저한 과실은 10, 중과실은 20).

② 도표에서 수정요소의 구분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하나를 선택해서 무거운 쪽의 과실만을 적용한다.

③ 수정요소의 수치는 기본과실에 가산 또는 감산한다. 어느 한쪽에 가산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감산을 하고 반대로 어느 한쪽에 감산을 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가산을 하여 준다. 따라서 양자의 최종 과실비율의 합계는 언제나 100%가 되어야 한다.

3. 자동차와 자전거 사고의 수정요소

① 간선도로
② 야간
③ 자전거의 좌측통행
④ 자전거의 현저한 과실
⑤ 자전거의 중과실
⑥ 어린이·노인
⑦ 인근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 경우
⑧ 자전거횡단도 이용
⑨ 자동차의 현저한 과실
⑩ 자동차의 중과실
⑪ 자전거의 교차로 대각선 횡단

문제 4

10점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보험금

1. 가불금

1) 법적 근거 : 자배법

2) 청구권자 : 피해자

3) 청구권의 내용

치료비에 관하여는 그 전액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은 책임보험 범위내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발생손해액의 50%에 상당한 금액

4) 지급기한 및 지급거절사유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자배법상으로는 지급거절 사유가 없으며 지급거절 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실무적으로 국토부에서 내부지침으로 정한 제한사유[4]에 해당하면 예외적으로 거절가능

5) 적용담보 : 대인배상Ⅰ. 단, 치료비는 대인배상Ⅱ[5]에도 적용.

---

4)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일방과실이 명백한 경우(신호위반, 중앙선침범, 후미추돌)를 말함.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후 이의제기에 따라 재조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가불금 지급 불가(재조사 결과가 나오면 가능)

5) 가불금은 자배법에 근거한 것이고 자배법은 대인배상Ⅰ에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데 보험실무상(국토부 내부지침상) 치료비는 대인배상Ⅱ에까지 확대 적용하고 있다.

2. 우선지급금

1) 법적 근거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2) 가불금 청구권자 : 피해자

3) 청구권의 내용

치료비는 통상비용 전액, 부상의 경우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휴업손해액의 50% 해당액, 후유장해의 경우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출한 위자료 전액과 상실수익액의 50% 해당액, 부상, 장해 위자료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지급기한 및 지급거절사유 : 청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 지급거절사유 없음

5) 적용담보 : 전담보

3. 가지급금

1) 법적 근거 : 자동차보험 약관

2) 가불금 청구권자 : 피보험자, 피해자

3) 청구권의 내용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한도내에서 치료비는 전액, 치료비 이외의 보험금은 약관에 따라 지급할 금액의 50%

4) 지급기한 및 지급거절사유

청구서류를 받은 때로부터 10일(연기사유 발생 시 서면통지), 지급금액이 정하여진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함. 지급거절 사유 존재시 지급거절 가능하며 지급거절 하여도 별도의 처분이 없음

5) 적용담보 : 전담보

4.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의 관계

피해자는 가불금, 우선지급금, 가지급금에 대한 청구권을 갖는다. 이 경우 세 가지 청구권은 각각 별개로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회사가 보상할 금액의 한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2010년(33회) 기출문제

문제 2 20점

자동차보험 약관상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및 대체 후 발생한 양도인의 사고(대체자동차의 사고)와 양수인의 사고(피보험자동차의 사고)에 대한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1. 양도인의 사고(대체자동차사고)

1)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체)

피보험자동차의 대체(교체)란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기존의 피보험자동차를 폐차 또는 양도하고 보험자의 승인을 얻어 기존의 보험계약을 새로 교체(대체)된 자동차(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자동차)로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교체의 성립시점 및 승인의 효과

보험계약자 등의 교체승인 신청을 보험자가 승인한 때이다. 보험회사가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며 보험자가 승인한 때로부터 즉시 기존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계약이 새로 교체(대체)된 자동차로 승계(이전)되고 기존 피보험자동차의 보험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 따라서 승인받은 대체자동차를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는 대체자동차에 승계된 보험계약으로 유효하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3)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승인 결정을 한 이후의 대체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4) 대체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대체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폐차 또는 양도 사실이 생긴 때로부터) 보험회사가 승인할 때까지 시간적 공백이 생기게 되는데 이 기간동안 대체자동차에 의해 발생한 사고는 대체자동차를 다른 자동차특별약관상의 다른 자동차로 간주하여 동 특약으로 보상하게 된다.

2. 양수인의 사고(피보험자동차의 사고)

1) 피보험자동차 양도의 의의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다만, 보험계약 승계의 뜻을 서면 등으로 보험회사에 통지하여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에는 그 승인한 때부터 양수인에게 보험계약이 승계된다.

2) 양도의 유형

①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물권적으로 이전하는 경우** : 매매, 증여 등 그 개별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의 목적인 피보험자동차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물권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상속, 합병 등과 같이 계약상의 권리, 의무가 상속인 또는 존속 회사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법률상 당연히 이전하는) 경우는 양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② 소유권을 유보한 매매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산 사람' 또는 대차계약에 따라 자동차를 '빌린 사람'이 그 자동차를 피보험자동차로 하고, 자신을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 그 자동차를 '판 사람' 또는 '빌려준 사람'에게 반환하는 경우

③ 양도인이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을 상실하고 양수인이 사실상의 운행지배를 취득하는 경우

3) 양도의 효과

① **양도 사실을 보험회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보험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경우** : 보험회사가 승인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양도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자는 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② **보험회사가 승인한 경우** : 보험회사가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양수인에게 승계되고 양도후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그 10일이 되는 날의 다음날 0시에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 현실적으로 보험계약의 양도 승인신청 제도 및 승계제도는 존재하지 않으나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에는 부득이 약관 내용대로 써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 3

10점

대인배상Ⅱ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에서 각각의 피보험자를 개별적으로 적용하여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경우를 모두 기술하세요.

1. 대인배상Ⅱ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사항

①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사고
② 기명피보험자 이외의 피보험자의 고의사고
③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또는 이와 유사한 사태
④ 지진, 분화, 태풍,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
⑤ 핵연료물질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영향
⑥ 유상운송
⑦ 제3자와의 계약으로 인한 가중손해
⑧ 시험용·경기용·경기를 위해 연습용 사용중
⑨ 피보험자 및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
⑩ 산업재해 사고

2. 피보험자개별적용의 의의

자동차보험에서 동일한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피보험자가 복수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요건이나 면책약관의 적용 여부 등을 피보험자마다 개별적으로 가려 그 보상책임 유무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이론을 말한다. 면책약관개별적용이라고도 부른다.

3. 대인배상Ⅱ의 피보험자개별적용 조항

①보험계약자·기명피보험자의 고의사고, ②유상운송, ③시험용·경기용 또는 경기를 위해 연습용으로 사용중 생긴 사고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들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위 답안은 현행 약관 기준이며 2010년 출제 당시 약관은 상기(현재)와 달랐음.

문제 4 10점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확정하기 위해 협조·대행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기술하시오.

1. 보험회사가 합의 등을 협조·대행하는 이유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합의 등을 협조·대행하는 이유는 1) 비전문가인 피보험자가 직접 손해배상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담보할 수 없고, 2)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와 배상책임 유·무 및 적정성 관련 보험자와의 분쟁이 빈발할 수 있고, 3) 전문가가 직접 개입하면 신속하고도 적정한 손해액 산정(확정)이 가능하므로 1) 및 2)에서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뿐더러 4) 피보험자의 번거로움을 덜어줌으로써 보험회사의 서비스를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험회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2. 협조·대행 관련 약관규정(약관 제36조)

1) 피보험자의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피보험자의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확정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와 행하는 합의·절충·중재 또는 소송(확인의 소를 포함)에 대하여 협조하거나 피보험자를 위하여 이러한 절차를 대행한다.

2)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동일한 사고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이나 가지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금액) 내에서 위 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한다.

3) 1)항의 절차에 협조하거나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의 요청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는다.

4) 다음의 경우에는 1)항의 절차를 대행하지 않는다.

①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액이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명백하게 초과하는 때

②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하지 않는 때

3. 공탁금의 대출(약관 제37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절차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에 대해 보상책임을 지는 한도에서 가압류나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공탁금을 피보험자에게 대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상한다. 이 경우 대출금의 이자는 공탁금에 붙여지는 것과 같은 이율로 정하며, 피보험자는 공탁금(이자 포함)의 회수청구권을 보험사에 양도하여야 한다.